



OECD 가입의 득실과 기업의 대응 방안

우리나라의 OECD의 가입은 회원국으로서 선진 각국의 주요 경제 정책 수행의 축적된 경험 정보의 활용, 세계 경제의 주요 현안 논의시 폭넓은 자국의 입장 반영, 다른 교역 상대국과 통상 마찰 및 시장 개방 문제 협의시 협상의 강화 기대 등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지위 및 대우를 격상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분담금의 납부, 개발 원조 의무, 서비스 교역 및 대외 자본 거래 자유화의 부담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기업 자금 조달 창구의 대내외적 다양화와 해외 자산 운용 수단의 다변화 예상에 따른 금융 비용 절감 노력과 선진 수준의 금융 조달 및 운용 능력을 제고하고, 자본 시장 개방의 지속화로 인한 직접 금융 기획 확대를 기업 재무 구조의 개선 기회로 삼으며, 선진국의 축적된 경험과 정보의 적극 활용으로 해외 직접 투자·지사 설치시 외국 기업들과 제휴하는 등 기업 활동의 범세계화로 대응해야 한다.

주상영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청연구원(經博)

우리나라는 오는 3월 말 OECD 가입 의향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96년 말 가입이 기정 사실화 되었다. 대부분 선진국들인 OECD 회원국들은 통합 경제 규모가 전세계 GDP의 85% 이상을 차지할 정도이며 세계 경제 운용을 사실상 주도해 나가고 있다. 현재 한국은 세계 11위의 교역 대국이며, EU를 하나로 볼 때는 제 6위국에 해당되어, 더 이상 국제 사회에서 개발 도상국의 범주에 안주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즉, 경제력과 교역 규모 면에서 국제적 책임과 의무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주요한 국제 경제 현안에 관한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자국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한편으로는 그에 상응하는 국제적 책임과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은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OECD 가입에 즈음하여 OECD의 일반적 사항에 대해 개관하고 가입에 따른 혜택과 의무 사항,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의 활

동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 OECD 개요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회원국의 경제 성장 도모 및 세계 경제 발전에 공헌, 개발 도상국에의 원조, 자유 무역의 확대를 주요 목적으로 서유럽 18 개국과 미국, 캐나다가 회원국이 되어 1961년 9월에 창설되었다. 사실 OECD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부자 나라들의 모임이라고 인식되었으나 일본, 핀란드,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가 추가로 가입했고 작년에 멕시코의 가입이 승인됨으로써 지역적 기반이 넓어지고 있다. 그러면 OECD는 성격상 어떠한 기구인가? OECD는 WTO와 같이 시장 개방이나 국가간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 기구가 아니고 회원국간의 정책 협의와 정책 검토를 통하여 경제 협력을 증진시키는 기구이다. 회원국 정부 대표들은 각국 경제 정책을 비교·검토하고 상호 의견 교환 및 조정을 하게 되는데, OECD의 결정 및 권고 사항은 회원국 전체의 합의에 기초를 둔다.

OECD의 주요 활동은 구조 조정, 무역 등 경제 문제에 대한 정책 토의이나 그 이외에도 환경, 교육 문제, 원자력 등 삶의 질에 관련된 광범위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2,000 명에 가까운 정규 인력으로 구성된 OECD 사무국은 자료 수집 및 연구, 분석 작업을 통해 회원국 대표간의 토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실상 OECD는 경제·사회의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서 세계 선진 경제에 대한 통계 자료 및 연구 결과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의 자료 공급원 중의 하나이다.

OECD의 전반적인 활동은 크게 3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첫번째는 각 회원국의 주요 경제·사회 문제에 대한 토의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규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이고 두번째는 UR, 환경 협상 등 주요 국제 회의에서 논의될 사안에 대하여 회원국들이 사전에 의견 교환 및 협의를 통해 공동 해결책 및 전략을 모색하는 일이며, 그리고 셋째는 주요 국제 경제 문제에 대하여 회원국간 적용시킬 규범을 만들어 공표·시행함으로써 국제 경제 질서 형성의 산과 역할을 하는 일이다.

■ OECD의 가입에 따르는 혜택과 의무 사항

OECD 가입을 통해 회원국은 선진국의 주요 경제 정책의 수행에 관하여 축적한 경험과 정보가 협의를 통해 전수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OECD 무역위원회는 美·日間に 쌍무적으로 체결된 제 1차 반도체 협정(1986~1991)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국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듯했던 同협정의 파행성을 지적, 多者間 질서인 GATT에 위반되는 사항을 적절히 조정토록 유도한 바 있다. 세계 경제의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자국의 입장을 보다 폭넓게 반영시킬 수 있다. 또한 다른 교역 상대국과의 통상 마찰 및 시장 개방에 따른 문제를 쌍무 협의할 때도 협상력의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즉, OECD 가입은 어느 의미에서는 한 국가를 선진국으로 공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 사회에서 회원국의 지위 및 대우를 격상시키게 된다.

그러나 OECD 가입에 따르는 의무 사항도 만만치는 않다. 우선 OECD의 諸규정을 수락하여야 하며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생긴다. OECD에 가입하려면 방대한 OECD 규정들을 원칙적으로 수락해야 하지만 규정이 제정된 성격과 취지, 그리고 우리의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유보 또는 적용 면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약 170 개의 규정을 각 규정별로 내용을 검토한 뒤 우리의

정책 수준 및 제도 현황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수락 또는 유보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OECD 각국 분담금의 크기는 기본적으로 각국의 GNP에 비례된다. 이때 어느 회원국도 해당 예산 총액의 25% 이상 또는 0.1% 이하를 부담할 수 없으며 매년 0.75% 이상 증감할 수 없다(단, 미국은 25%, 아이슬란드 및 룩셈부르크는 0.1%로 고정되어 있다). 그리고 OECD 회원국은 원칙적으로 GNP의 0.7% 이상을 ODA(공적개발원조)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회원국이 이 권고 사항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지는 않다. 예를 들면 OECD에서 개발 원조를 수행하고 있는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회원국의 경우도 1991년 기준 GNP대비 ODA의 비율이

<표 1> 경상 무역외 거래 자유화 규약

<자유화 항목>

- 사업 활동 : 수선, 조립, 가공, 기술 지원, 공사 계약, 저작권, 상표 및 발명, 급료 및 임금
- 무역 : 수수료 및 중개료, 창고 저장 및 보관, 통관, 관세 및 수수료
- 운송 : 해상 화물, 내륙 수로 화물, 육로 운송, 항공 운송, 항만 용역
- 보험 : 사회 보장 및 사회 보험, 적하 보험, 생명 보험, 再보험 및 再再보험
- 은행 및 금융 서비스 : 지불 서비스, 결제, 청산 및 예치 서비스, 자산 관리, 자문 및 대리 서비스, 지점 설치 및 영업 조건
- 자본 소득 : 이윤, 배당금, 이자, 임대료
- 여행 및 관광
- 영화
- 개인 소득 및 지출 : 연금, 이민자 송금, 신문, 정기 간행물의 정기 구독, 스포츠 상금
- 공공 수입 및 지출 : 조세, 정부 지출, 領事 수입금
- 기타 일반 : 광고, 재판 비용, 벌칙금, 단체 회비, 전문 용역, 특허권 등록

0.33%에 불과하다. 또한 DAC 가입이 의무적이 아니기 때문에 ODA가 작은 그리스,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터키 등은 DAC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3년 GNP대비 ODA가 0.06% 정도이며 이를 1990년대 후반까지는 DAC 회원국중 최저 수준(약 0.2%)까지 증대할 계획이다.

분담금의 납부 및 개발 원조 의무 이외에 가장 핵심적이고 엄격한 의무 사항은 자유화 의무 사항으로 이는 경상 무역외 거래 자유화 규약과 자본 이동 자유화 규약으로 양분된다. 이

양대 자유화 규약은 회원국간 서비스 및 자본 이동의 자유화를 촉진시켜 보다 자유로운 국제 경제 환경의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GATT가 무역 자유화를 IMF가 경상 거래에 따른 결제 수단인 외환 자유화를 추구한데 반해, OECD 경상 무역외 거래 자유화 규약은 기초가 되는 거래(계약)의 자유화까지 추구하고 있으며, 자본 이동 자유화 규약은 EC 지침을 제외하고는 자본 이동의 자유화 촉진을 위해 현재 다국간에 적용되는 유일한 제도이다.

OECD 자유화 규약의 주요 원칙은 크게 세

<표 2> 자본 이동 자유화 규약

<자유화 항목>

- 직접 투자 : 기업, 자회사, 지사의 설립, 확장 및 자본 참여, 5년 이상의 대부
- 직접 투자의 청산
- 부동산 거래 : 신축, 매입, 매도
- 자본 시장에서의 증권 거래 : 사모, 공모에 의한 발행, 증권 시장 상장, 증권의 매입, 매도
- 단기 금융 시장 거래 : 사모, 공모를 통한 발행, 상장, 매입, 매도, 대부, 차입
- 기타 양허가능 금융 수단 및 증권화되지 않은 권리 등의 거래 : 사모, 공모를 통한 발행, 상장, 매입, 매도, 기타 자산과의 교환
- 공동 투자 증권의 거래 : 사모, 공모에 의한 발행, 증권 시장 상장, 증권의 매입, 매도
- 무역 및 용역 거래 관련 신용
- 금융상의 신용 및 대부
- 담보·보증 및 보충 금융
- 예금 계정 거래 : 비거주자의 거주 기관 계정, 거주자의 비거주 기관 계정
- 외환 거래 : 자국 통화를 대가로 한 외국 통화의 매입, 매도, 외국 통화간 교환
- 생명 보험 : 자본 및 확정 연금의 송금
- 개인간 자본 이동 : 대부, 증여 및 기증, 결혼 지참금, 상속 및 유증, 채무 변제, 해외 이주, 도박, 비거주자의 저축
- 자본 실물 이동 : 유가 증권 및 자본적 권리 증서, 지불 수단의 반입, 반출
- 비거주자 봉쇄 자금의 처분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점진적 자유화 : 자유화 규약에 명시된 자유화 항목에 대하여 개별 회원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일정 기간 자유화 유보(reservation) 또는 적용 면제(derogation)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즉, 자유화 항목이 추가되거나 기존의 자유화 항목의 포괄 범위가 확대될 경우, 그리고 OECD에 신규로 가입할 경우에 해당 회원국의 경제 여건에 비추어 유보가 가능하다. 또한 해당 회원국의 경제 및 재정 금융상의 이유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면 또는 특정 자유화 항목의 적용 면제가 가능하다.
- ② 내국민 대우 : 동일한 상황 하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거주자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해야 한다.
- ③ 무차별 대우 : 한 회원국의 자유화 조치는 모든 회원국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OECD 가입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 방안

OECD 가입은 서비스 교역 자유화와 대외 자본 거래 자유화 등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는 하나 이러한 자유화의 부담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제도와 관행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상당 부분 우리 스스로 수용해야 할 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OECD 가입은 우리가 회원국으로서 선진 각국의 축적된 경험 및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OECD는 창립 이래 UR 등 다자간 협상에서 논의된 주요 국제 경제 현안을 국제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수년 전부터 서로 논의하여 선진국 공동의 입장을 정립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앞장서 왔다. 미가입국은 이 과정에 참여하여 선진국의 입장이 결정되기 이전 자국의 입장을 반영시킬 기회가 없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OECD 가입은 우리에게 환경, 노동, 경쟁 정책 등 새로운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흐름을 예측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또 그 논의 과정에 우리의 입장을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된다. 예를 들어 OECD 가입을 통해 철강, 조선, 반도체 분야 등의 시장 개방에 대한 쌍무적 문제를 다자간 협의 무대로 유도하여 논의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여기서 OECD 가입이 우리나라 기업에 미칠 영향을 파악함에 있어, OECD의 투자 및 다국적기업위원회(CIME)와 자본 이동 및 무역외거래위원회(CMIT)의 활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양 위원회의 준비 작업을 거쳐 올해 5월로 예정된 OECD 각료이사회는 새로운 다자간 투자 협상의 개시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빠르면 96년경에 다자간 투자 협정(MIA)의 체결이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96년 OECD 가입 예정인 우리나라로서는 협상에는 참여하지 못하면서,

가입과 동시에 다자간 투자 협정을 받아들여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경을 넘나들며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대 다국적 기업들은 과거 UR 협상에서 무역 관련 규범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투자 관련 규범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는데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보다 강력한 다자간 투자 규범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환경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OECD 수준과 비교할 때 크게 뒤쳐진 부분이 많다. 특히, 서비스업의 개방 수준이 저조하며, 경영 참가 목적의 기업의 인수·합병(M&A)과 기존 기업에의 외국 자본 참여에 있어 상당한 제약이 존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동일한 상황 하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거주자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국민 대우 원칙에 위배되는 규제들이 무수히 존재하고 있다. OECD 가입과 새로이 모습을 갖추고 등장할 다자간 투자 협정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이러한 규제들은 대부분 제거되어 갈 것이고, 이는 당연히 기업 활동에 있어 경쟁이 심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는 외국 상품뿐만 아니라 외국의 자본과 경영 기법들도 경쟁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움직임이 개방 압력이 늘어난다는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볼 수는 없게 되었으며, 자유화·개방화의 투자 환경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세계 투자 환경의 개선은 선진국의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에게도 보다 넓은 시장

이 열리게 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 투자는 90년대에 들어서 크게 신장되어 93년에는 10.6억 달러의 해외 투자를 기록하였고, 현재의 추세로 보아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사실 그 동안 정부는 해외 직접 투자 대상을 산업 정책의 차원에서 장려·일반·제한 사업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 왔으나, OECD 가입과 함께 최소한의 유보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외 직접 투자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자유화할 것이다. 종래 해외 투자가 소수 선진국의 점유물이었던데 반해 최근에는 개도국들도 해외 투자의 유치는 물론 해외 진출에 있어서도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기업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라는 차원에서 해외 투자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OECD 가입으로 그 길이 더욱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OECD 가입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은 물론 기업의 외자 조달 수단이 다양화되어 해외 자금 조달의 기회가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하면 연지급 수입, 기업 및 금융 기관의 현지 금융에 대한 규제를 우선적으로 완화하고, 그 다음으로 기업의 외화 증권 발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상업 차관의 경우는 마지막 단계에서 허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외환 제도 개혁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시설에 도입용 상업 차관에 대해서는 한도 제한없이 허용하기로 하였고, 그밖에 SOC 참여 기업, 외국인 투자 첨단 기업의 시설재 수입용에 한해

상업 차관을 일정 한도내에서 허용하고, 96~97년 기간 중에 일반 기업(대기업 포함)에 일부 허용하고, 98~99년 중에는 완전 자유화할 방침이다. 88년 이후 중단되었던 상업 차관의 허용은 시설재 도입용에 한해 중소기업부터 대기업의 순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자기 신용을 바탕으로 직접 상업 차관을 도입하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였으며, 자기 신용이 부족한 중소기업들도 상업 차관을 포함한 외화 대출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예전보다 확대되었다.

한편, 기업의 주요한 해외 자금 조달 수단인 해외 증권 발행에 있어 정부는 현재 발행 자격 발행 용도·발행 한도에 엄격한 제약을 가하고 있으나, 단계적인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금년부터 해외 증권 발행 한도를 확대할 것이며, 96~97년 중에 주식 연계 증권의 발행, 98~99년 중에는 모든 해외 증권의 발행에 대해 심사부 신고제의 형태로 자유화할 것이다. 개방의 원칙은 주식·주식 연계 채권·주식 비연계 채권의 순으로 해외 발행을 완화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발행 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다.

정부는 급격한 자본 유입으로 인한 통화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상업 차관의 도입, 해외 증권의 발행 확대 등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OECD 회원국들의 유보 수준을 볼 때, 상업 차관의 경우에는 멕시코를 포함한 어떠한 회원국도 유보를 두고 있

지 않고 있으며, 해외 증권의 발행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은 통화 정책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국 통화 표시 채권 발행에 대해서만 유보하고 있는 정도이다. 따라서 현재 확정된 자본 자유화 방안을 그대로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OECD 회원국의 자본 거래 자유화율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자본 이동 자유화의 수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시설재 수입을 전제로 한 상업 차관의 도입, 해외 증권의 발행 확대 등이 예상되므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금 조달 여건은 한층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ECD 가입은 우리나라 기업 활동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무엇보다 기업 자금 조달의 창구가 대내외로 다양화되고 해외 자산 운용 수단도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융 비용의 절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금융 조달 및 운용 능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하며, 자본 시장 개방의 지속화로 직접 금융 기회가 확대될 것이므로 기업 재무 구조를 크게 개선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편, OECD 가입으로 선진국이 축적한 경험과 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해외 직접 투자·해외 지사 설치시 외국 기업들과 전략적 제휴를 도모하는 등 기업 활동의 범세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